

|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|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(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을 통칭한다)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적용범위) 삼육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, 외부 장학재단,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
- 제 3 조 (사무관장)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, 장학금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,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대학원장이 관장한다.
- 제 4 조 (일반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제 2 장 대학원위원회

- 제 5 조 (구성)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 [개정: 2018.02.28]
- ① 위원장은 대학원장,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.
 - ② 위원은 신학대학원장, 원장, 임상간호대학원장, 대학원 부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처장, 재무실장, 각 학과장,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제 6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단,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. [개정: 2018.02.28]
- ① 장학금 지급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②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,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
 - ③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 7 조 (회의 및 의결)
-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장학금 종류와 수혜내용

- 제 8 조 (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)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[별표1]과 같다. [개정: 2018.02.28]
- 제 9 조 (교외 장학금의 수혜자격) 교외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학규정에 따라 선발 추천한다.
- 제 10 조 (수혜기간)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, 교외 장학금은 지급 기관 및 단체의 장학규정에 따른다.
- 제 11 조 (장학금 신청)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

제 12 조 (장학금 지급)

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,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장학금은 매 학기 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장학금 지급 중지)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.

① 학칙에 의거 징계처벌을 받은 자

② 휴학, 자퇴 및 제적된 자

③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자

제 14 조 (장학금 지급 제한)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등록금의 50%를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.

① 장애인장학금, 입학성적우수장학금

②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

③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

④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. 【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】

장학금 구분	적용 대학원	지급액	지급 기준	대상자	비고
입학성적장학금	전체	등록금의 20%	등록생 5명 이상일 때 학과 1위	전기, 후기 신입생 (정원외, 추가모집 제외)	박사과정 해당없음
입학금 감면	전체	입학금		본교 교직원 본인 본교 석사출신 박사과정 입학생 본대학원에서 본대학원으로편 입학한 자	본교 교직원의 경우 대학원 입 학자(행렬결의자)에 한함
장려장학금	전체	등록금의 20%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 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정규 학위과정생	
진학장학금	전체	등록금의 100%	입학 첫 학기	신입생모집 학년도 전/후기 직전 삼육대학교 졸업자	장려장학금(20% 포함)
외국인장학금	전체	A:등록금의 50%	A: 직전학기 성적 4.0이상	TOPIK 4급 이상 혹은 TOEFL IBT 71점, IELTS 5.5, CEFR B2, TEPS 600점(NEW TEPS 327점) 이상, 의료보험 가입자	정원외 외국인 입학자에 해당함
		B:등록금의 40%	B: 직전학기 성적 3.5이상		
		C:등록금의 20%	C: 직전학기 성적 3.0이상		
	대학원	등록금의 50%	논문을 제외한 학위수료 요건 충족자로 서 TOPIK 4급 이상 취득 또는 한국어과 정 600시간 이상 이수자	이중언어과정 정규학기 재 학생 중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	
대학원	입학금 감면	이중언어과정 재학생 중 대학원장이 추 천한 자			
교육지원조교 장학금	대학원	월 500,000원	이중언어과정 운영학과장 추천자	대학원 재학생	
장애인장학금	전체	A:등록금의 30% B:등록금의 10%		A:장애등급 1~3급 B:장애등급 4~6급	A 해당자는 장려장학 포함하여 50%이상 지급가능
교직원 장학	전체	등록금의 20%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A:본교 교직원 본인 B:본교 교직원 자녀 C:본교 교직원 배우자	본교 정규직 교직원
교역자 장학	전체	등록금의 20%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A:교역자 본인 B:교역자 배우자	한국연합회 산하 정규직 교역자 A: 삼육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함(사회복지 법인 삼 육재단 추천한자로 연간 2인)
공무원 장학	전체	등록금의 20%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7급 이상 공무원	
학과장추천장학금	전체	등록금의 20%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학과/학위과정별 재학생 5인 이상일 때 학과장이 추천하는 1인	학과 및 학위과정별 재학생이 20명 이상일 때 1인, 40명 이상 일때 2인 추가 선정
연구조교 장학금	전체	월 500,000원			연구조교 운영 규정에 따름
원우회 임원 장학금	전체	A:등록금의 10% B:등록금의 5%	재학생 수 20명 이상	A: 원우회 회장 B: 원우회 부회장	
목회자양성 장학	신학대학원				한국연합회 장학규정에 따름
목회자향학 장학	대학원 신학대학원				한국연합회 장학규정에 따름
산학협동기관장학금	임상간호 대학원	등록금의 10%	국립암센터, 원자력의학원 재직자	임상전문간호학과	

*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함.